



DK 번역 행정사 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4, 현죽빌딩 828호

대규모 및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적자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상호관세에 의한 수입 규제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 문의 : <https://www.dkyew.net>
- 이메일 : yewdongkyu@gmail.com
- 영문본 출처 : 백악관 (<https://whitehouse.gov>)

본 문서는 DK 번역 행정사 사무실에서 번역한 비공식 번역본이며 퍼블릭 도메인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번역본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번역본의 무단 복제, 배포, 수정,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법적 해석이나 공식 효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This document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provided by DK Certified Translation Office and based on public domain content provided by the U.S. Senate. This translatio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has no legal effect. Unauthorized reproduction, distribution, modification, or commercial use of this translation is prohibited. For legal interpretation or official use, please refer to the original document or consult with a legal professional.

행정명령 제 14257 호 (2025 년 4 월 2 일)

대규모의 지속적인 미국 상품 무역 적자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상호관세 부과를 통한 수입 규제

미합중국 헌법 및 법률, 국제 비상경제권한법(50 U.S.C. 1701 et seq.)(IEEPA),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et seq.)(NEA), 1974 년 개정 무역법 604 조(19 U.S.C. 2483) 및 미합중국 법전 제 3 편 301 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나,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불균형한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 그리고 미국 교역 상대국들의 국내 임금 및 소비를 억제하는 경제 정책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및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위협은 전부 또는 상당부분 미국의 외부, 즉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국내 경제정책 및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나는 이 위협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2025 년 1 월 20 일, 나는 「미국 우선 무역 정책 대통령 각서(America First Trade Polic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여, 우리나라의 대규모 및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 이러한 적자로 인한 경제 및 국가안보의 영향 및 위협을 조사하고,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검토·확인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하였다. 2025 년 2 월 13 일에는 「상호 무역 및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라는 제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여 교역 상대국의 비상호적 무역 관행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러한 비상호적 관행과 무역적자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2025 년 4 월 1 일, 나는 이러한 조사들의 최종 결과를 받았으며, 오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한다.

대규모 및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적자는 우리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첨단 국내 제조업 규모 확대 능력을 저해하며, 중요한 공급망을 훼손시키고, 우리 국방 산업 기반을 적대적인 외국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무역적자는 상당 부분 양자 무역 관계에서 상호주의 결여로 발생한다.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어렵게 만드는 불균형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으로 입증되며, 또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국내 임금 및 소비를 억제하여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로써 자국 제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경제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조건들은 본 명령이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원인이다.

1934 년부터 수십 년간, 미국의 무역 정책은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의회는 대통령에게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이후에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 하에서, 상호 관세율 인하를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1934 년에서 1945 년 사이, 행정부는 상호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총 32 건의 양자 상호 무역협정을 협상·체결했다. 이후

1947년부터 1994년까지 참가국들은 8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로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그 이후 7차례의 관세 인하 라운드가 체결되었다.

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교역 상대국 간 무역 관계는 매우 불균형해졌다. 전후 국제경제 시스템은 세 가지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첫째, 미국이 전 세계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앞장서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점. 둘째, 이러한 완화가 결국 더 많은 경제 수렴 및 미국 교역 상대국 내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셋째, 그 결과 미국은 대규모 및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를 쌓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상호주의나 상대국 내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사건, 협정, 약속들을 연쇄적으로 발생시켰고, 이는 결국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대규모 및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적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간단히 말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최혜국대우(MFN) 기준으로 관세율을 구속(binded)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들이 반드시 낮은 수준에서 관세율을 구속하거나 상호주의적으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WTO에 따르면 미국의 단순 평균 MFN 관세율은 3.3%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지만, 브라질(11.2%), 중국(7.5%), 유럽연합(EU)(5%), 인도(17%), 베트남(9.4%)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훨씬 높은 단순 평균 MFN 관세율을 보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평균 MFN 관세율은 특정 제품군에 대해 경제별로 적용되는 훨씬 더 큰 관세율 차이를 은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내연기관 승용차 수입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EU(10%), 인도(70%), 중국(15%)은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네트워크 스위치 및 라우터에 대해서는 미국이 0% 관세를 부과하지만, 인도는 유사 제품에 대해 10%를 부과한다. 브라질(18%)과 인도네시아(30%)는 미국(2.5%)보다 에탄올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껍질 벗기지 않은 쌀에 대해서는 미국 MFN 관세율이 2.7%(종가세 상당치)지만, 인도(80%), 말레이시아(40%), 터키(평균 31%)는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사과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지만, 터키(60.3%)와 인도(50%)에는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비관세 장벽 또한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상호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박탈한다.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는 무역 상대국별로 미국 수출에 대한 수많은 비관세 장벽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장벽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수입장벽 및 면허제한; 통관 장벽 및 무역 촉진의 결함;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예: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또는 기술 규정); 안전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불충분한 특허, 저작권, 영업 비밀 및 상표 제도 및 지적 재산권의 불충분한 집행; 차별적인 면허 요건 또는 규제 표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장벽 및 디지털 제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관행; 투자 장벽;

보조금; 반경쟁적 관행; 국내 국영 기업에 대한 차별; 노동 및 환경 표준 보호에 대한 정부의 실패; 뇌물 수수; 부패

더욱이, 비관세 장벽에는 교역 상대국의 국내 경제 정책 및 관행(통화 관행 및 부가가치세 포함)과 그와 관련된 시장 왜곡이 포함되며, 이는 국내 소비를 억제하고 미국으로의 수출을 촉진한다. 이러한 상호주의 부족은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점유율이 약 68%인 반면, 아일랜드(27%), 싱가포르(31%), 중국(39%), 한국(49%), 독일(50%)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훨씬 낮다는 사실에서 명백하다.

동시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교역 상대국들은 새로운 관세 협상 라운드 및 비관세 장벽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다자 및 다자간 해결책을 반복적으로 차단했다. 동시에, 미국 경제가 수입에 지나치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교역 상대국들은 양자 무역 협상에서 미국 수출품에 상호적인 대우를 제공할 유인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비대칭성은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야기했다. 미국이 일시적으로 양자 무역 흑자를 누릴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누적은 그러한 장벽이 없었을 때보다 그 흑자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성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국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 및 지정학적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 및 경제 안보의 기반이다.

2017년 나이의 첫 행정부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모두 국내 제조를 늘리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2023년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 생산량에서 미국 제조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최고치 28.4%에서 17.4%로 감소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제조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미국 제조 역량을 감소시켰다. 자동차, 조선, 의약품, 기술 제품, 공작 기계, 기본 및 가공 금속과 같은 특정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강력하고 탄력적인 국내 제조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특히 크다. 왜냐하면 일단 경쟁자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충분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미국 생산이 영구적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안팎에서 미국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위 물자 및 장비를 제조할 수 있도록 방위 산업 분야에서 제조 역량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 너무 많은 군사 장비를 공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물품 비축량은 미국의 국방 이익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또한, 미국 방위 기업들은 바이오 제조, 배터리,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포함한 다양한 중요한 분야에서 새롭고 첨단 제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민과 본토는 물론 동맹국 및 파트너를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보 우산을 유지하려면, 핵심 투입물에 대한 부당한 수입 의존 없이 이러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대규모 상류 제조업 및 상품 생산 생태계를 보유해야 한다.

상품에 대한 외국 생산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미국 공급망을 지정학적 혼란 및 공급 충격에 취약하게 만듦으로써 미국 경제 안보를 위협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경제의 취약성은 미국인들이 필수 제품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과 후티 반군이 중동에서 화물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 드러났다.

미국 제조 역량의 감소는 제조업 일자리 손실을 포함하여 다른 방식으로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 1997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은 약 5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으며, 역사상 가장 큰 제조업 고용 감소를 경험했다. 또한, 많은 제조업 일자리 손실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지역에서 제조업 일자리 손실은 가족 형성을 감소와 오피오이드 남용과 같은 다른 사회적 추세의 증가에 기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

미국 경쟁력의 미래는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달려 있다. 오늘날 제조업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11%에 불과하지만, 미국 생산성 성장의 35%와 수출의 60%를 차지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제조업이 미국 혁신의 주요 엔진이며, 모든 특허의 55%와 모든 연구 개발(R&D) 지출의 70%를 담당한다. 중국에 있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R&D 지출이 200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연평균 13.6%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내 R&D 지출은 연평균 5%만 성장했다는 사실은 제조업과 혁신 간의 강력한 연관성을 증명한다. 또한, 모든 제조업 일자리는 다른 관련 산업에서 7~1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경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조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없듯이, 자국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면 오래 존속할 수 없다. 2013년 2월 12일자 대통령 정책 지침 21(중요 인프라 보안 및 탄력성)은 식량 및 농업을 "중요 인프라 부문"으로 지정한다. 이는 "미국에 너무나 필수적이어서 [그것의] 무능력 또는 파괴가 안보, 국가 경제 안보, 국가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그 모든 조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부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가 퇴임했을 때 미국은 농산물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오늘날 그 흑자는 사라졌다. 교역 상대국이 부과한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예상되는 연간 490억 달러의 농산물 무역 적자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명령한다:

제 1 조. 국가비상사태.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나의 최고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나는 지난 5년 동안에만 40% 이상 증가하여 2024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한 대규모 및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에 반영된 조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러한 무역 적자는 특히 미국 제조 및 방위 산업 기반의 국내 생산 능력 위축에 기여한 무역 관계의 비대칭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또한 미국 생산자들의 수출 능력과 그에 따른 생산 유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러한 비대칭성은 외국 교역 상대국 간의 관세율에서 상호적이지 않은 차이뿐만 아니라, 외국 교역 상대국에 의한 비관세 장벽의 광범위한 사용도 포함하며, 이는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인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에는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비과학적인 위생 및 식물 위생 규칙; 불충분한 지적 재산권 보호; 억제된 국내 소비(예: 임금 억제); 취약한 노동, 환경 및 기타 규제 표준 및 보호; 부패가 포함된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미국과 교역 상대국이 비슷한 관세율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특히, 이러한 비대칭성은 외국 교역 상대국 간의 관세율에서 상호적이지 않은 차이뿐만 아니라, 외국 교역 상대국에 의한 비관세 장벽의 광범위한 사용도 포함하며, 이는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인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에는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비과학적인 위생 및 식물 위생 규칙; 불충분한 지적 재산권 보호; 억제된 국내 소비(예: 임금 억제); 취약한 노동, 환경 및 기타 규제 표준 및 보호; 부패가 포함된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미국과 교역 상대국이 비슷한 관세율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대규모 및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의 또 다른 결과인 특정 중요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국내 제조 능력이 없는 것은 미국 경제를 공급망 혼란에 덜 탄력적으로 만듦으로써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와 그에 따른 산업 능력 손실은 군사 준비 태세를 위협했다; 이러한 취약성은 미국으로의 수입 흐름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군사 준비 태세 및 국가 안보 태세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최근 해외 무력 충돌의 증가로 인해 특히 심각하다. 나는 미국 국제 경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촉구한다.

제 2 조. 상호 관세 정책.

미국의 정책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추가적인 종가세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흐름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모든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추가 종가세는 10%로 시작하며, 그 직후 본 명령의 부록 I에 열거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추가 종가세는 본 명령의 부록 I에 명시된 세율로 증가한다. 이러한 추가 종가세는 내가 위에서 설명한 근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해결되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적용된다.

제 3 조. 이행.

- (a) 본 명령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법에 따라 10%의 추가 종가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관세율은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이후에 소비를 위해 통관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인출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단,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이전에 선적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 모드로 운송 중인 상품은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이후에 소비를 위해 통관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인출되더라도 이러한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본 명령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 동부 일광 절약 시간에 본 명령의 부록 I에 열거된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미국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법에 따라 본 명령의 부록 I에 명시된 국가별 종가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관세율은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이후에 소비를 위해 통관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인출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단,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이전에 선적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 모드로 운송 중인 상품은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이후에 소비를 위해 통관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인출되더라도 본 명령의 부록 I에 명시된 국가별 종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별 종가세율은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존 미국 무역 협정 조건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 (b) 본 명령의 부록 II에 명시된 다음 상품은 법에 따라 본 명령에 따른 종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i) 50 U.S.C. 1702(b)에 포함되는 모든 물품; (ii) 1962년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고 2018년 3월 8일자 선포 9704호(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개정됨), 2018년 3월 8일자 선포 9705호(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개정됨), 2020년 1월 24일자 선포 9980호(파생 알루미늄 품목 및 파생 철강 품목의 미국으로의 수입 조정)(개정됨), 2025년 2월 10일자 선포 10895호(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 및 2025년 2월 10일자 선포 10896호(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에서 선포된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및 그 파생물; (iii) 1962년 무역 확장법 232조 개정안에 따라 부과되고 2025년 3월 26일자 선포 10908호(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미국으로의 수입 조정)에서 선포된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iv)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품목, 특정 중요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을 포함하여 본 명령의 부록 II에 열거된 기타 제품; (v) 미국 통합 관세표(HTSUS) 2열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되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모든 물품; 그리고 (vi) 1962년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향후 조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물품.

- (c) 본 명령에 의해 설정된 관세율은 아래 이 섹션의 (d) 및 (e) 하위 섹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관세, 수수료, 세금, 부과금 또는 요금에 추가된다. (d) 캐나다로부터의 물품과 관련하여, 나는 2025년 2월 1일자 행정명령 14193호(우리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관세 부과)(2025년 2월 3일자 행정명령 14197호(우리 북부 국경 상황에 대한 진전) 및 2025년 3월 2일자 행정명령 14231호(우리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관세 수정)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 흐름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로부터의 물품과 관련하여, 나는 2025년 2월 1일자 행정명령 14194호(우리 남부 국경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관세 부과)(2025년 2월 3일자 행정명령 14198호(우리 남부 국경 상황에 대한 진전) 및 2025년

3월 2일자 행정명령 14227 호(우리 남부 국경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관세 수정)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 및 불법 이민 흐름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국경 비상 관세 조치의 결과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협정(USMCA)과 관련하여 HTSUS 일반 주석 11 호의 조건에 따른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모든 상품(HTSUS 98 장 서브챕터 XXIII 및 99 장 서브챕터 XXII 에 명시된 처리 포함)은 이러한 우대 조건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USMCA 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없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모든 상품은 현재 25%의 추가 종가세가 적용되며, 캐나다로부터 수입되고 USMCA 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없는 에너지 또는 에너지 자원 및 탄산 칼륨은 현재 10%의 낮은 추가 종가세가 적용된다.

- (e) 본 명령 조건에 따라 캐나다 또는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종가세율은 이 섹션의 (d) 하위 섹션에 설명된 기존 명령에 명시된 종가세율에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섹션의 (d) 하위 섹션에 명시된 명령이 종료되거나 유예되는 경우, USMCA 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캐나다 및 멕시코의 모든 품목은 추가 종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USMCA 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없는 물품은 12%의 종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캐나다 및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이러한 종가세율은 에너지 또는 에너지 자원, 탄산 칼륨, 또는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완성된 물품의 부분 또는 구성 요소로서 USMCA 에 따라 무관세 처리가 가능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f) 보다 일반적으로, 본 명령에 명시된 종가세율은 대상 물품의 비미국 콘텐츠에만 적용된다. 단, 대상 물품 가치의 최소 20%가 미국 원산지인 경우에 한한다. 이 하위 섹션의 목적상 "미국 콘텐츠"는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구성 요소에 기인하는 물품의 가치를 의미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미국 콘텐츠 가치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문서(통관 제출 서류 포함) 수집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물품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할 권한이 있다. (g) 본 명령의 제 2 조에 명시된 관세가 적용되고 2025 년 4 월 9 일 오전 12 시 1 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이후에 외국 무역 지대에 입고되는 대상 물품(19 CFR 146.43 에 정의된 "내수 상태"로 입고될 수 있는 물품 제외)은 19 CFR 146.41 에 정의된 "특권 외국 상태"로 입고되어야 한다.
- (h) 19 U.S.C. 1321(a)(2)(A)-(B)에 따른 무관세 소액 처리는 이 섹션의 (a) 하위 섹션에 설명된 물품에 대해 계속 이용 가능하다. 19 U.S.C. 1321(a)(2)(C)에 따른 무관세 소액 처리는 상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소액 처리 자격이 있는 물품에 대해 본 하위 섹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 수입을 완전히 신속하게 처리하고 징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통보를 할 때까지 이 섹션의 (a) 하위 섹션에 설명된 물품에 대해 계속 이용 가능하다. 그러한 통보 후, 19 U.S.C. 1321(a)(2)(C)에 따른 무관세 소액 처리는 이 섹션의 (a) 하위 섹션에 설명된 물품에 대해 이용할 수 없다.

- (i)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관세에 대한 추가 수정)은 본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물품에 대한 모든 관세 및 수수료는 해당 명령에 따라 요구되고 상세하게 징수되어야 한다.
- (j) 환적 및 회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본 명령 또는 후속 명령에 의해 중국 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종가세율은 홍콩 특별행정구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k) 본 명령에 설명된 관세율을 설정하기 위해 HTSUS는 본 명령의 부록에 명시된 대로 수정된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본 명령의 부록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 (l) 여기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본 명령의 지시와 일치하지 않는 외국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과 관련된 이전의 대통령 선포, 행정명령 또는 기타 대통령 지시 또는 지침은 본 명령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료, 유예 또는 수정된다.

제 4 조. 수정 권한.

- (a)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는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경제 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무역 및 제조 담당 선임 고문, 국가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과 협의하여, 본 조치가 위에 설명된 비상 상황(전체 무역 적자의 증가 또는 미국 교역 상대국에 의한 비상호적 무역 협정의 최근 확장으로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방식)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필요한 추가 조치를 나에게 권고해야 한다.
- (b) 교역 상대국이 본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미국에 보복할 경우, 나는 본 조치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본 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늘리거나 범위를 확대하도록 HTSUS를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
- (c) 교역 상대국이 비상호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나는 본 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거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HTSUS를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
- (d) 미국 제조 능력 및 생산량이 계속 악화될 경우, 나는 본 명령에 따라 관세를 늘리도록 HTSUS를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

제 5 조. 이행 권한.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는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경제 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무역 및 제조 담당 선임 고문, 국가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국제 무역 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본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IEEPA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각 행정 부서 및 기관은 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권한 내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보고 요건.

미국 무역대표는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경제 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무역 및 제조 담당 선임 고문, 국가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과 협의하여, NEA 401(c)조(50 U.S.C. 1641(c)) 및 IEEPA 204(c)조(50 U.S.C. 1703(c))에 따라 본 명령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기 및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

제 7 조. 일반 조항.

- (a) 본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사항을 손상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i) 행정 부서,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
 -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예산관리국장의 기능.
- (b) 본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예산 가용성을 전제로 이행되어야 한다.
-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개인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법상 어떤 권리나 이익(실질적 또는 절차적)을 창출하거나 부여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백악관

2025년 4월 2일.